

없었고, 지방의 경쟁력은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개발, 주민후생을 향상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상하수도시설과 폐기물처리, 각종 편의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지방정부의 몫이 되었다.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프라시설의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시설 확충활동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에 있어서 일반행정활동과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행정활동과 인프라시설의 공급 및 운영은 목적에 접근하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즉, 일반행정서비스(행정, 경찰, 소방 등)는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기 때문에 조세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인프라시설을 통해 공급되는 서비스는 서비스 공급의 수혜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반행정활동과 같이 조세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서비스 혜택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가깝게 운영할 수 있다.

조세의 변화에 대한 반응은 매우 민감하고 탄력적으로 나타나지만 수혜자가 분명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대가를 요구하는데 대한 반응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비탄력적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 중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부분 인프라시설들이며, 상하수도, 지하철, 의료사업, 주차장, 관광, 도서관, 박물관, 시장사업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폭넓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또는 자치단체장들의 기업적인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기업적 경영활동이나 민간자본의 활용 및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한 재화와 서비스 공급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주민들의 복지수요와 후생 증대욕구가 크게 늘고 있다. 시대적 상황도 역할을 하고 있다. 먹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경제사회의 구조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다. 정부가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적 행정만으로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주민들에게 직접 편익을 줄 수 있는 급부 행정이